

2024 칠곡지역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

□ 추진배경

-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시스템 구축 및 일상생활의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등 청렴도민감사관 제도 운영
- 지역 건의·애로사항 청취,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

□ 추진현황

(단위 : 건, 명)

시군명	개최일자	주요사업장 방문	제보·건의사항	제보·건의 등 처리결과			비고 (참석)
				수용		불수용	
				완료	처리중	불가	
칠곡군	'24. 5. 27.(월)	왜관읍 행정문화복합 플랫폼 건립공사	11	4	3	4	9

연번	건의자	건의 및 제보내용	조치내용	비고
1	000 청렴도민감사관	○ 약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행정시스템 마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약성민원 대처방안 제시 필요	- 약성민원 대처, 행정시스템 마비 등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나 - 시군에서 지침 수립시 행안부-도-시군이 의견을 공유하여 긴밀히 협조하겠음.	불수용
2	000 청렴도민감사관	○ 청렴도민감사관의 '감사관' 명칭 변경 건의	- 청렴도민감사관의 규정 및 임무를 고려해 볼 때 적합한 명칭으로 판단됨	불수용
		○ 임야 전원주택 주변 사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도 주변에 주택 등 건축이 불가한 현실임. 사도의 기부채납 등으로 도로를 군 또는 도에서 관리하는 방안 마련 필요	- 건축허가 관련 사도(진출입로) 개설시 예정도로를 기부채납 하도록 유도하고는 있으나,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. - 향후 현 실정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 간 협의, 관련법 개정 등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음.	

연번	건의자	건의 및 제보내용	조치내용	비고
3	000 청림도민감사관	○ 가산면 학산 구 도로(국도, 다부동 정상에서 다부ic 사이)의 중앙선은 실선으로 도로변 식당 및 카페 진입을 위해 멀리(4km 내외) 돌아가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관광객 등의 불편함을 초래하며, 도로에 과속방지턱 부족으로 위험 야기하므로 조치 필요	- 해당 도로는 지방도 923호선으로, 왕복 2차선, 제한속도 40km/h이며 차로 폭이 협소하여 U턴 차로 설치 불가능하나, 좌회전을 위한 중앙선 절선 검토 가능. - 과속방지턱은 제한속도 30km/h 이하에 설치 가능. - 중앙선 절선 및 제한속도 하향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이므로,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합한 위치 선정 및 심의 요청 등 검토하겠음.	불수용
4	000 청림도민감사관	○ 북삼읍 인강1길 49-1 일원 보행자 도로 필요	- 해당 구역은 2차선 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로서, 도시계획도로 밖의 인도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후 사업 시행 여부 검토 필요.	장기 검토
5	000 청림도민감사관	○ 북삼읍 보순1교 교량 진출입 사거리 시야확보 불가로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교량과 도로 인접 부분 시야확보 필요. 타 교량 설계 시에도 동일한 문제 발생 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	- 국토교통부 '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'에 의거 교량 관련 설계 기준 기 시행중임 - 단기적으로 교차로 주변 잡목 제거 및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시야 확보. - 향후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하여 필요 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도로 구조 개선 방안 검토 요청 예정.	수용
		○ 북삼읍 KTX 통과로 인한 소음 증가하고 있음. 일부분 소음방지장치가 있으나, 김천에서 통과하는 터널(북삼읍 송오리 일원) 부근 소음 증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방지장치 추가 필요	- 방음벽 설치에 관련 법령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야 가능하므로, 소음 측정 후 기준 초과 시 시설물 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에 방음벽 추가 설치 건의하겠음.	수용
		○ 금오산 효자봉 등산로 정비사업의 완료로 철곡에서 정비한	- 민원건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결과 해당부지는 사유지 편입등	장기 검토

연번	건의자	건의 및 제보내용	조치내용	비고
		<p>부분은 전망이 좋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는 칠곡의 등산로는 전망이 좋음(데크있음). 칠곡군민들이 이용하는 전망은 구미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으로 구미시 관할구역도 잘 정비해주길 바람 (데크없음)</p>	<p>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</p>	
6	<p>000 청렴도민감사관</p>	<p>○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, 농약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거 대상으로 정기적 수거 필요. 제초매트 등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방치 또는 불법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상황이어서 쓰레기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므로 해결 방안 필요</p>	<p>1. 영농폐비닐 및 농약병 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는 마을 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분리·배출하면,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·처리하고 있음 -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. <p>2. 그 외 영농폐기물 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사필름 등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, -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상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. <p>3.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홍보 및 불법소각 단속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(2~5월, 10~12월)을 운영하고 있으며, 농민들이 집중수거기간에 영농폐기물을 적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 - 시군과 함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합동단속(2~5월)을 실시하고 있으며, 환경오염·산불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음. 	<p>불수용</p>

□ 지역별 간담회 사진



▲ 칠곡지역 청렴도민감사관 간담회

□ 향후계획

- 간담회 결과는 「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홈페이지」 게시
-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전달 및 협의 추진, 조치계획수합, 결과통보를 실시하고 '수용·처리중' 및 '수범사례' 사항에 대해 반기별 사후관리 추진 등